

# 대한민국 경상남도 정부와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정부 간 양해각서

경상남도 정부와 메릴랜드주 정부는 다음 조항에 동의한다.

이하, “경상남도” 및 “메릴랜드”를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하며, 다음을 전제한다.

메릴랜드주와 경상남도는 1991년 11월 18일부터 자매 지역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메릴랜드주와 경상남도는 2023년 10월 5일 항공우주 산업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자매 지역 관계를 확장하였다.

메릴랜드주와 경상남도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협력과 상호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메릴랜드주와 경상남도는 2025년 4월 17일 경상남도의 주최로 항공우주를 주제로 한 리셉션에서 각자의 우주항공 산업과 특정한 기회 분야를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메릴랜드주는 경상남도가 메릴랜드주에서 특정한 항공우주 기회를 직접 체험하고,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더 많은 공동 활동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에서는 경상남도와 메릴랜드주에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당사자들 간에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 이 틀 안에서, 당사자들은 공공, 민간 또는 협회 조직 및 기관, 특히 정부 기관, 교육 기관, 시민 사회, 그리고 경상남도와 메릴랜드의 기업 공동체 간의 파트너십 발전을 장려한다. 주요 목적은 항공우주 산업, 경제 개발, 교육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및 사회적 보호 향상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당사자들 간 항공우주 대표단 교류에 대한 책무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각 도(주)지사는 자매지역으로 항공우주 대표단을 파견하고, 방문 기간 동안 해당 대표단의 항공우주 관련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2조(비구속적 협력)**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재정 및 기타 자원만을 사용하여 본 양해각서에 명시된 활동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협력하고 협조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선의를 표현한 것이다.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본 양해각서는 다음의 사항에 한하여 적용된다.

- (a) 각 당사자가 상호 활동과 프로젝트에서 협력 및 협조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 (b) 각 당사자가 각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3조(협력 분야)** 당사자들은 향후 당사자들이 전략적이라고 간주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다른 협력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항공우주 산업 및 다음의 공통 관심 분야 중 일부 또는 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협조한다.

- a) 생명 과학, 생명 공학, 바이오헬스, 의료 기술, 그리고 의료 장비
- b)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항공우주 기술 및 연구, 차세대 항공기 기술, 로봇 공학, 디지털 및 신흥 기술
- c) 전략 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수출입 무역, 교통 현대화, 신규시장 진출
- d)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 회복력이 있는 지역 사회 지원, 환경 보호 및 환경 피해 대응, 청정 재생 에너지, 혁신적인 녹색 기술, 생물다양성 보존
- e) 청년 교류, 교육 강화, 유관 정부 기관, 대학, 기업에서의 인턴십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교육 교류

f) 농업 및 수산업 부문과 관련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g) 말 산업 및 말 기반의 인적 교류 지원

h) 문화와 관광

**제4조(이행 방법)** 당사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다.

- a)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고위급 정부 회의 개최
- b) 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무역 박람회, 에어쇼 및 기타 관련 회의에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석 및 참여
- c) 타국에서 개최되는 무역 박람회 및 기타 유사 회의에서 회동
- d)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 문서, 전문 지식 및 우수 사례 교환
- e) 교육, 연구 및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들의 각 지역에서 전문가, 교수, 전문 인력의 교류
- f)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 이니셔티브 실행 및 신규 활동 및 프로젝트 추진
- g) 당사자들의 각 지역에서의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 h) 제5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 2회 또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실무단 구성

**제5조(실무단을 통한 이행)**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임명한 3~5명의 대표로 구성된 경상남도-메릴랜드 실무단을 구성한다. 해당 대표는 당사자의 직원이거나 당사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임명한 시민 자원봉사자일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별도의 기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실무 그룹은 본 양해각서로부터 발생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 하기 위해 연 2회 화상회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경상남도-메릴랜드 실무단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a) 공통의 우선 관심 분야 내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될 활동 및 프로젝트 확인 및 승인
- b) 합의된 활동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건과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해 각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결정

- c) 진행 중인 활동 또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검토, 그 결과를 평가, 그리고 필요한 조정을 수행
- d) 본 양해각서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고려

**제6조(협의 및 조정)** 각 당사자는 소관 범위 내에서 본 양해각서에 명시된 협력 및 교류에 관심 있는 자들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해 필요한 매커니즘을 수립한다. 당사자들은 제3조에 열거된 분야 및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7조(정보 교환)** 본 양해각서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본 양해각서 이행 과정에서 수행되는 각 당사자의 소통 및 정책 운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해서만 교환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8조(확장 조항)**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본 양해각서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포함시키거나 기존 협력 수준을 확대 및 보완하기 위해, 본 양해각서의 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상호 합의로 확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책임)**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 및 프로젝트의 이행은 각 당사자의 국제 협력을 위한 가용 예산 자원에 따른다.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업무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재정적 또는 기타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배타성)**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다른 기관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1조(개정 및 수정)**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 발효일을 명시한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또는 수정은 본 양해각서에 첨부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12조(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발효일”)에 발효되며, 5년 동안 유효하다. 본 양해각서는 본 양해각서의 조건에 따라 달리 수정, 갱신 또는 종료되지 않는 한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의 5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정 또는 갱신에 대해 상호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본 양해각서가 공식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경우,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한 번 동일한 5년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제13조(종료)**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 중인 활동 및 프로젝트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 시,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 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5조(기존 양해각서와의 관계)** 본 양해각서는 발효일 기준으로 12조에 따라 수정된 바와 같이, 2023년 10월 5일 박완수 도지사와 웨스 무어 주지사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서명한 경상남도와 메릴랜드주 간 우주항공 산업 협력 강화에 관한 기존의 업무협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기록 및 서명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 1부씩 2부로 작성되며, 각 당사자는 기록을 위해 각 서명된 양해각서의 사본을 1부씩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2025년 4월 17일, 대한민국 경상남도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양 언어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메릴랜드주지사

웨스무어